## KOSHA GUIDE

C - 45 - 2012

(7)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기나 전력선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

## 5.3 천공작업

- (1) 점보드릴, 레그햄머 등 착암기의 기계적 결함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, 이완, 성능저하 등의 장비는 교체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대 또는 대차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하며 차륜, 지지구조, 발판, 사다리, 안전난간 등의 가시설 구조에 대하여는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천공작업자에게는 안전모, 마스크, 보안경, 안전장갑, 귀마개 등의 개인보호 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이의 착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천공작업전 부석, 절리, 용출수, 누수 등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암 절리방향의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.
- (5) 천공작업중 이상 용출수의 다량 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방수대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부 수직시추 및 수평시추를 실시하여 채수대 여부를 확인후 적절한 보강공법 및 공법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(6) 설계, 시방기준에 의한 천공위치, 각도, 깊이 등을 준수하고 장약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7) 천공시에는 전 발파시 불발화약류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천 공작업을 중단하고 이를 제거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8) 천공시에는 전번의 발파공을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최소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평행굴착을 하여야 한다.
- (9) 천공의 지름은 폭약효과 및 폭력기준으로 가능한 한 작은 것이 좋으나 폭약을 장진할 때 무리하게 쑤셔 넣으면 위험하므로 폭약 직경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.